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83조(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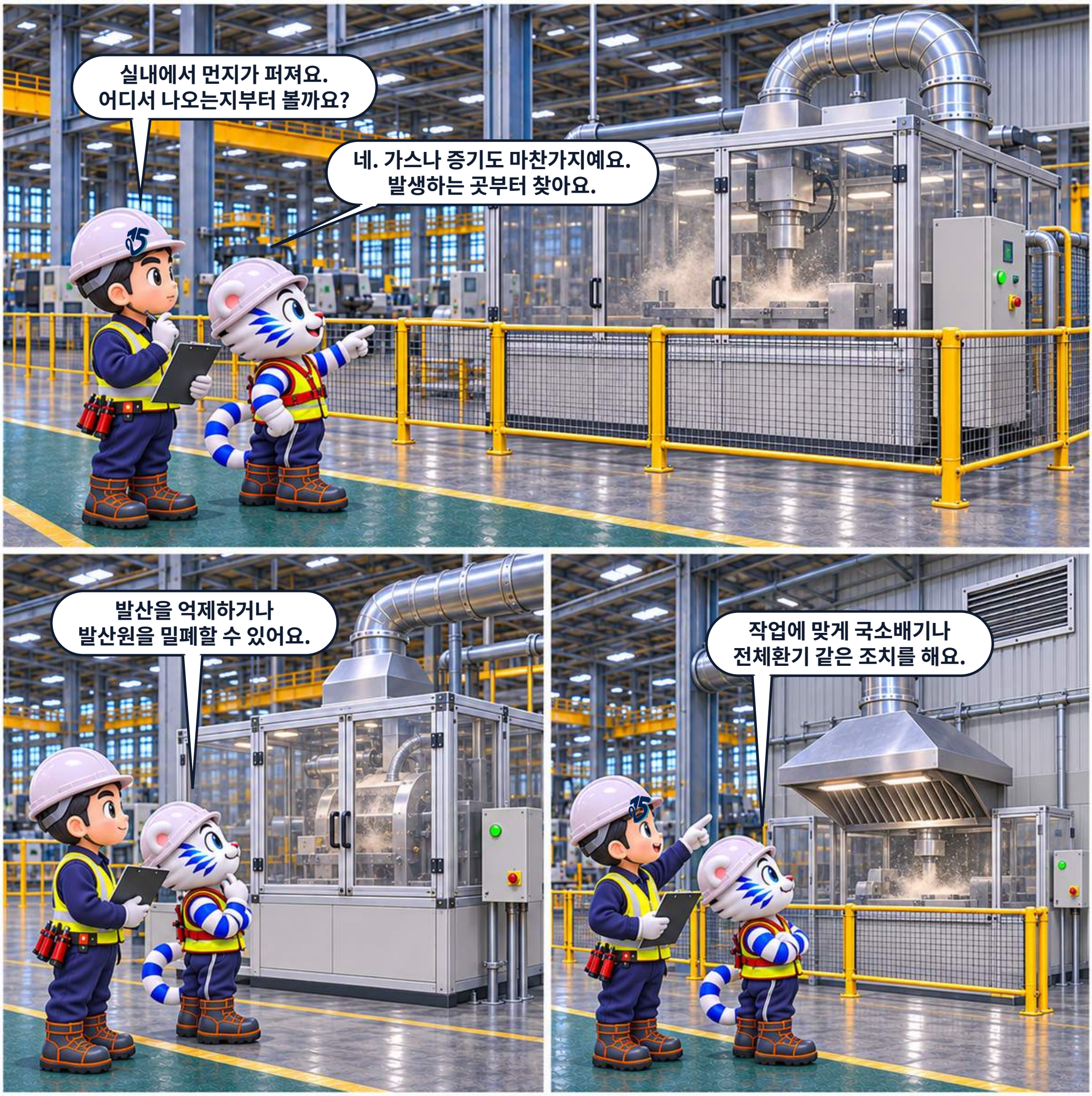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83조(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가스 · 증기 · 미스트 · 흄 또는 분진 등(이하 “가스등”이라 한다)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**필요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24